

주민세(재산분) 신고·납부 안내문

서울특별시 지방세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, 귀 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매년 7월은 주민세(재산분) 신고·납부의 달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(재산분)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 또한 기계장치, 저장시설과 같이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그 시설물의 수평 투영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- 납세의무자 : 7월 1일 현재 사업주
- 과세 대상 : 사업소 연면적이 330㎡를 초과하는 사업소
- 과세 표준 : 사업소의 연면적
- 세 율 : 1㎡당 250원
- 납부 기간 :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

○ 납부 방법 :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 서울시 소재 은행(농·수협)과 우체국에 납부
서울시에서는 주민세(재산분) 납세의무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E-TAX(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<http://etax.seoul.go.kr>, ⇒ 신고납부 ⇒ 주민세 재산분에서 신고·납부)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, 납세의무자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·납부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실 경우에는 서울시 소재 은행, 농협, 수협, 우체국에 납부하셔야 하고, 서울시외 지역에서는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우체국에서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
아울러 위 기간 내에 주민세(재산분)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%를,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(세액×지연일수×100,000분의25)를, 그리고 둘 다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꼭 신고·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기타 주민세(재산분)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업소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2019. 7. .

서울특별시장